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춘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1. 2.

발 의 자 : 김춘남, 김상조, 김수민,
김익수,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정하영,
황경환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2. 주요내용

-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 규정
- 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의 지원
- 구미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신고한 센터에 대한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

3. 참고사항

- 「아동복지법」 제4조, 제14조, 제16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4. 조례안 : 붙임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미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센터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개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농 복합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각종 문화 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및 정서지도 프로그램 지원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4. 종사자 교육비
5. 프로그램 운영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지역아동센터장
3.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4. 교육지원청 관계자
5.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6.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
4. 센터의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센터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년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위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된 때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와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령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自活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삭제<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7. 삭제<2002.12.26>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신고증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명칭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1조(시설기준 등)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찬성자(발의자)서명명부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illegible]